2022 학교생활기록부

주요 개정사항 안내











정부혁신 보다 나은 교육부

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

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

주요 개정사항(고)

해설

제4조(처리요령)
(고 P 28)



WHY

사유: 교과보충 학습 과정 이수 내역 미입력

2021

✓ 가.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입력 주체

항 목		입력 주체	비고
교과학습 발달상황	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	교과담당교사	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(2021학년도 1, 2학년 적용)의 경우,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에 따른 보충학습 과정 이수 내역 입력
	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	학급담임교사	

2022

수정 ✓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에 따른 **보충학습 과정 이수 내역 미입력**

해설

제4조(처리요령)
(고 P 29)



WHY 사유: 기관명 기재 금지

2021

✓ 바.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,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.
- 고유 명사(외국 학교명, 도서명과 저자명 등)

▼

2022

수정 ✓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,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.
- 고유 명사(도서명과 저자명 등)

※ 외국학교명은 기재 금지

해설

제4조(처리요령)
(고 P 30)



WHY

사유: 학적 변동에 따른 교육정보 시스템 입력 자료 명료화

2021

✓ **전출·휴학·제적·자퇴·퇴학 등 학적 변동** 시
원적교에서는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.
*각종자료: 학적 특기 사항, 출결상황,
창의적체험활동 영역별특기사항(누가기록포함),
자유학기 활동상황, 행동특성 및
종합의견(누가기록포함) 등

▼

2022

추가 ✓ *각종자료
학적 특기 사항, 출결상황,
창의적체험활동 영역별특기사항(누가기록포함),
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,
행동특성 및 종합의견(누가기록포함) 등

기재요령

제7조(인적·학적사항)
(고 P 37)



WHY

사유: 행정정보공유 연계 시스템 적용

2022

신설

-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을 통해 주소 입력 가능
  경로: 교육정보시스템의 [학적]-[기본학적관리]-[학생주소연계]

기재요령

제7조(인적·학적사항)
(고 P 37)



WHY

사유: 학생정보 변경 처리 방법 명료화

2021

✓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

➡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

2, 3학년 학생정보와 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

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

2022

수정

✓ **학생 정보 변경:**

신입생은 '수정', 재학생(졸업생)은 '정정' 처리

– 단, 신입생의 개명은 '정정' 처리

–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누가기록

※개명으로 인한 정정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함

※학생 정보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생략가능

기재요령

제7조(인적·학적사항)
(고 P 38)



WHY

사유: 학생정보 변경 시 기재경로 명료화

2022

신설

- ✓ 신입생의 학생정보(성명 제외) 수정
  - ➡ [학적]-[기본학적관리]-[기본신상관리]
- ✓ 학업중단학생의 학생정보 정정
  - ➡ [학생부]-[정정대장관리]-[정정대장 작성]-[이름으로 조회]-[학생찾기]

※ 신입생이 입학 학년도에 학업 중단 후 학생정보 변경(개명 제외) 시 학적반영 취소 후 수정

기재요령

제7조(인적·학적사항)
(고 P 40)



WHY

사유: 용어 명료화

2021

※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·재취학·편입학 등은 불가능함.
※ 다만,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(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).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,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.

2022

※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·재취학·편입학 등은 불가능함.
※ 다만,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(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).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,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.

기재요령

제7조(인적·학적사항)
(고 P 40)



WHY

사유: 전입학생의 해당 학년 수료 기준 명료화

2022

신설 ✓ 전입학생의 해당 학년 수료 기준
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
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되는 경우

기재요령

제7조(인적·학적사항)
(고 P 41)



WHY

사유: 중복기간 삭제
정정시 증빙자료 명료화

2022

신설

✓ 재입학·편입학·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 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

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함

기재요령

제7조(인적·학적사항)
(고 P 42)



WHY

사유: 외국학교 재학 사실 기재 삭제

2021

✓ 4)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,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.
다만, 학적사항의 '특기사항'란에 외국학교명과 수학기간은 입력할 수 있다.

2022

삭제

✓ 4)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,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.

기재요령

제7조(인적·학적사항)
(고 P 44)



사유: 외국학교명 입력 제한

2021

〈예시〉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1학년이 아닌 학년에 들어온 경우

2021년 09월 02일 □□고등학교 제2학년 편입학	
특기사항	20○○.○○.○○.-20○○.○○.○○. 중국 ○○○○학교 재학

2022

〈예시〉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1학년이 아닌 학년에 들어온 경우

2022년 09월 02일 □□고등학교 제2학년 편입학	
특기사항	

훈령

별표8(출결상황 관리 등) (고 P 50)



WHY

사유: '출석일수'로 용어 명료화

2021

✓ 재입학·전입학·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·전입학·복학 불가

2022

수정

✓ **재입학·전입학·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·전입학·복학 불가**

훈령

별표8(출결상황 관리 등) (고 P 51)



WHY

사유: 투표권 보장

2022

신설 ✓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
➡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

해설

제8조(출결상황)
(고 P 56)



WHY 사유: 용어 명료화

2021

✓ 수업일수

다만,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·전입학을 요구할 경우,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취학·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(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).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,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.

2022

✓ 수업일수

다만,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·전입학을 요구할 경우,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취학·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(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).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,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.

해설

별표8(출결상황 관리 등)
(고 P 58)



WHY 사유: 투표권 보장

2022

신설 ✓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
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
(당일 왕복 소요 시간 포함 가능)

해설

별표8(출결상황 관리 등)
(고 P 59)



WHY

사유: 원격수업 운영 및 기록의 체계화

2022

신설

✓ **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(방송·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) 수강학생의 출결 등 처리에 관한 내용**

✓ **학년 초**(또는 학기 초) 교과별(학년별) 협의회 등에서 **원격수업의 출결·평가·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계획** 마련

✓ 원격수업운영위원회* 심의 후 학교장 최종 결정
*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, 학교교육과정 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

– 부득이한 경우 학기 중 계획 수립 가능

해설

별표8(출결상황 관리 등)
(고 P 59)



WHY 사유: 원격수업 운영 및 기록의 체계화

2022

신설

- ✓ **출결 확인**은 **당일 매 교시별 차시 단위**로 실시하여 **3일**(수업일 기준, 휴업일 제외, 학교장 임의 변경 불가) **내 최종 확인 및 기록**
- ✓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 학습을 제공한 경우 **3일** (수업일 기준, 휴업일 제외, 학교장 임의 변경 불가) 내 최종 확인 및 기록
- ✓ 출결 마감은 학급담임교사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월(月)단위로 처리
  ※ 실시간 조·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출결 관리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운영
- ✓ **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 곤란 등 물리적 환경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**은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가능

해설

별표8(출결상황 관리 등)
(고 P 60)



WHY

사유: 원격수업 운영 및 기록의 체계화

2022

신설

수업유형	출석 확인 방법									확인(인정) 기간
	실시간	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(LMS) 활용 방법					기타(대체 확인)			
	교사 확인	학습 시작일	진도율	접속 기록	학습 시간	산출물 탑재	SNS/ 메시지	대체 학습	증빙 자료	
실시간 쌍방향	○	○	○	○	○		○	○	○	당일*
콘텐츠 활용	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원칙적으로 당일 (수업일 기준 최종 3일 내)
과제수행 중심	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

*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,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함.

해설

별표8(출결상황 관리 등)
(고 P 60)



WHY

사유: 원격수업 운영 및 기록의 체계화

2022

신설

- ✓ 평가의 객관성 · 공정성 ·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하여 지필평가, 수행평가 등을 실시하고, 세부 사항은 「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」 별표 9를 참조
  ※ 지필평가는 반드시 등교하여 실시함.
- ✓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·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
- ✓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하지 못한 학생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음 (단,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 활동은 기재 가능)

기재요령

제8조(출결상황)
(고 P 64)



WHY

사유: 학생선수 출석인정 허가 기준 변경

2021

✓ 학생 선수 ➡ 초 10일, 중 15일, 고 30일 범위 내 허용 가능
초과 가능 경우: 문체부장관(대한체육회장)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 시

2022

수정

✓ 학생 선수 ➡ 초 5일, 중 12일, 고 25일 범위 내 허용 가능
초과 가능 경우: 문체부장관(대한체육회장)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 시,
전국(소년)체육대회(지역예선 포함)에 참가하는 경우

기재요령

제8조(출결상황)
(고 P 65)

WHY

사유: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사유 추가

2021

✓ **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** 처리 조건
-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에 **실시간 미세먼지** 농도가 '나쁨'이상

2022

추가 ✓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**실시간 미세먼지** 또는 **초미세먼지 농도**가 '나쁨'이상인 경우

기재요령

제8조(출결상황)
(고 P 66)



WHY 사유: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

2021

✓ 위탁학생 출결처리 방법

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.

2022

수정 ✓ **위탁학생 출결처리 방법**

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처벌법」에 따라 **지방자치단체**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**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** 보호 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.

※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,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변동 없이 교육감(또는 교육장)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

해설

제9조(수상경력)
(고 P 68)



WHY

사유: 수상경력과 관련된 기재금지사항 명시

2021

✓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 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.

2022

추가 ✓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 과정 및 참가 사실은 **수상여부와 관계없이** 학교생활기록부 **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불가**

기재요령

제9조(수상경력)
(고 P 70)



WHY

사유: 참가대상(참가인원) 입력 기준 명료화

2021

✓ **참가대상(참가인원)**
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인원 기준으로,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**추천인원** 기준으로 입력

2022

수정 ✓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
대회인 경우 대회참가인원 기준으로,
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대상인원 기준으로
입력

기재요령

제13조(창의적 체험활동)
(고 P 89)



WHY 사유: 내용의 명료화

2021

✓ **진로활동**

– 특성화고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,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학생이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

학년	창의적 체험활동상황		
	영역	시간	특기사항
1	진로활동	4	직업기초능력평가(의사소통 국어, 의사소통 영어, 수리활용, 문제해결 영역)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.
3	진로활동	5	직업기초능력평가(의사소통 국어, 의사소통 영어, 수리활용, 문제해결, 직무적응 영역) 본평가에 참여함.

2022

수정 ✓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
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입력

<예시> [1학년] 직업기초능력평가(의사소통 국어, 의사소통 영어, 수리활용, 문제해결, 직무적응 영역)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(5시간).

<예시> [3학년] 직업기초능력평가(의사소통 국어, 의사소통 영어, 수리활용, 문제해결, 직무적응 영역) 본평가에 참여함(5시간).

기재요령

제13조(창의적 체험활동)
(고 P 90)



WHY

사유: 내용의 명료화 및 추가

2021

✓ **봉사활동 실적**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,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, 사회봉사,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,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,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.

2022

수정 ✓ 다음은 **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.**

1)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
2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
3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, 사회봉사,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
4)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
5)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, 사회봉사,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

기재요령

제13조(창의적 체험활동)
(고 P 90)



WHY

사유: 헌혈의 봉사활동 인정 시간 명료화

2021

✓ 봉사활동 시간

➡ 헌혈은 1회당 4시간으로 연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.

2022

수정

✓ 헌혈은 1회당 4시간으로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.

훈령

제15조(교과학습발달상황)
(고 P 94)

WHY 사유: 내용의 명료화

2021

✓ 중·고등학교의 '세부능력 및 특기사항'란에 **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의** 경우 **능력단위별**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기재

2022

수정 ✓ **능력단위별**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

➡ **능력단위 기반의 과목별**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

훈령

제15조(교과학습발달상황)
(고 P 95)

WHY

사유: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내용의 현행화

2021

✓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

2022

변경

✓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

해설

제15조(교과학습발달상황)
(고 P 113, 114)



WHY 사유: 기관명 기재 금지

2021

✓ 특성화고, 특수목적고,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생 **현장실습대상기관** 기재

2022

수정 ✓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대상기관(기관명) 기재불가

해설

제15조(교과학습발달상황)
(고 P 117)



WHY

사유: 보충학습 과정 이수에 따른 낙인효과 우려

2021

✓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 II 실무과목의
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및 보충학습과정 이수 입력
-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'보충 학습 과정'에 참여한 경우 이수 내용을 '교과학습발달상황'의 '세부능력 및 특기사항'란에 과목명, 이수시간, 이수기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.

2022

삭제 ✓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및 보충학습과정 이수입력 미기재

기재요령

제15조(교과학습발달상황)
(고 P 123)



WHY 사유: 내용의 명료화

2021

✓ 전문교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이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.

- 입력 서식
  ※(학기명) 과목명: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

2022

수정

✓ **전문교과 II 의 기초과목, 실무과목은 과목별로 입력하되,**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.

-입력 서식
※(학기명) 과목명: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
(단, 능력단위명 기재시 "[능력단위: 능력단위명]"으로 표기)

기재요령

제15조(교과학습발달상황)
(고 P 124)



WHY

사유: 보충학습 과정 이수에 따른 낙인효과 우려

2021

✓ 바.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**전문교과Ⅱ 실무과목**의 **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및 보충학습과정 이수 입력**
-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'보충 학습 과정'에 참여한 경우 이수 내용을 '교과학습발달상황'의 '세부능력 및 특기사항'란에 과목명, 이수시간, 이수기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.

2022

삭제 ✓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및 보충학습과정 이수입력 미기재

해설

제16조(행동특성 및 종합의견)
(고P131)



WHY

사유: 행동특성 용어 명료화

2021

✓ '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' 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.

※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.

2022

수정

✓ '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' 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.

※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.

기재요령

제19조(자료의 정정)
(고 P143)



WHY

사유: 중복기간 자료 삭제 시 객관적 증빙자료 추가

2021

✓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.

2022

추가

✓ **단, 재입학, 편입학, 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,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.**

해설

제21조(준용 등)
(고P149)



WHY 사유: 현행화

2021

✓ 제21조(준용 등)

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업무에 준용할 관련 법규는「초·중등교육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「개인정보 보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~ (후략)

2022

삭제 ✓ 제21조(준용 등)

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업무에 준용할 관련 법규는「초·중등교육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「개인정보 보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 ~~같은 법 시행규칙,~~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~ (후략)